



□□□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22. 7. 21.



I. 감사개요

O 기 간 : 2022. 07. 18. ~ 07. 21.(4일간)

O 대 상: □□□

○ 감사범위 : 2019. 10. 19.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6명(감사정보담당관 외 5명)

O 감사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운영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출장, 휴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공사 및 용역 설계 적정성 및 공사 시공 사후 관리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발생 등

Ⅱ. 감사결과

O 행정상

(단위 : 건)

ᆀ	본 처 본			현지	비고	
/AI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 정	주 의	미ᅶ
15	3	9	_	3	_	

O 재 정 상

(단위: 천원)

구 분	계	회 수	추징・부과	감 액	지 급
계	30	30	0	0	0
본 처 분	_	_	_	-	_
현지처분	30	30	_	_	_

O 신 분 상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훈 계	주 의	비고
-	-	_	_	_	

일려번호: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시정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O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미 폐기 현황

일련 번호	생산 연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비고
1	2015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1~11) [11권]	2018.12.31.	
2	2015	무인민원발급용지 사용현황 일일결산서	2018.12.31.	
3	2016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019.12.31.	
4	2016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2019.12.31.	
5	2017	문서고 출입자 명부	2020.12.31.	
6	2017	CCTV 점검일지	2020.12.31.	
7	2017	당직명령부	2020.12.31.	
8	2017	당직일지	2020.12.31.	

나. 위법 • 부당사항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5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 평가심의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공주시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영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주시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18건의 기록물에 대하여 공주시 기록물평가심의 및 정리(폐기)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 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법인카드 사용내역 미보고 현황

부 서	신용카드 사용부 미작성 및 전자문서 미보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부 미작성	비고
	2021.4. ~ 2021.12.	2021년도	

나. 위법 •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보관·관리」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고의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부를 작성하거나 e호조에서 월별 사용내역을 추출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월1회 내부결재할 수 있다.
- 또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에는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요구】

□□□□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내역 월1회 보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50만원 이상 명단 미첨부

지출 사유	지출금액(원)	지급일자	명단여부	비고
1건	500,000			(지급번호)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 팀별 회식	500,000	2021-07-02	부	00000248

O 집행과목 부적정

지출 사유	지출금액 (원)	지급일자	집행과목	적정과목	비고
6건	1,607,150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음료수 구입비	410,000	2020-06-29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00000166
사무실 내방객을 위한 음료수 구입	264,000	2021-02-03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00000041
사무실 내방객을 위한 음료수 구입	357,000	2021-06-11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00000203
사무실 내방객을 위한 음료수 구입	11,050	2021-07-06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00000252
직원 격려를 위한 총무팀 회식	219,500	2021-07-15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00000258
□□□행정복지센터 격려 물품 구입	345,600	2022-01-21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000000035

O 사용내역 미공개

대상기간	មាភ		
2020. 10. ~ 2020. 12. / 2022. 1. ~ 2022. 6.	미공개		

O 1인 단가 과지급

지출 사유	지출금액	지급일자	급식인원	적정금액	비고
3건	1,313,000				
직원노고 격려를 위한 만찬 급식	420,000	2020-11-03	12명	360,000	00000301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 팀별 회식	500,000	2021-07-02	12명	360,000	00000248
당면업무추진 직원 노고격려 오찬	393,000	2022-04-22	12명	360,000	00000158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기재하여야 한다.
- □□□□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5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등을 기재한 명단을 증빙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별표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제6호(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마목의 규정에 따라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 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소수의 일부 직원이 아닌 전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집행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 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에서는 **상기 기간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에 따라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직자에 대해 3만원 이하로 집행하여야 한다.
- □□□□에서는 직원 노고 격려를 위한 급식 외 2건에 대하여
 공직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통장수당 지급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통장기본수당 지급일 부적정

연번	지급일자	공무원 보수일	지연일 (조기지급일)	비고
1	2020.08.24.	2020.08.20.	4	
2	2020.12.21.	2020.12.18.	3	
3	2021.01.21.	2021.01.20.	1	
4	2021.02.22.	2022.02.19.	3	
5	2021.03.22.	2021.03.19.	3	
6	2021.04.21.	2021.04.20.	1	
7	2021.11.17.	2021.11.19.	(-2)	
8	2022.05.18.	2022.05.20.	(-2)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u>통·리·반장 기본수당 및</u>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4조(실비변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및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O 차량정비대장 미입력 현황

	정비대장				
지급일자	내 용	내 용 사용처 금		등록여부	비고
7건					
2019.11.06.	관용차량(**라****)수리	☆☆☆정비업소	425,000	부	
2020.11.11.	관용차량(**저****,**라****)수리	☆☆자동차공업사	120,000	부	
2020.11.30.	관용차량(**라****) 타이어교환	☆☆☆정비업소	170,000	부	
2020.12.15.	관용차량(**라****)수리	☆☆세차장	90,000	부	
2022.04.21.	관용차량(**저****)분무기계 수리	☆☆☆상사	66,000	부	
2022.03.07.	관용차량(**구****)정비 및 수리	☆☆☆☆자동차	68,000	부	
2022.03.07.	관용차량(**저****)정비 및 수리	***	288,000	부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제8호 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3. 차량유류수불대장 4. 차량운행일지 5. 차량정비대장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 O 제1항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

【 처 분 요 구 】

□□□장은

O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라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기록관리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및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 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O 하자검사 현황

구 분		정기 하자검사		만료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기 한 미준수	비고
):	11	62	62 48 14 16 9 11 5						
2020년	상반기	15	14	1	3	7	0	5	
2020년	하반기	13	0	13	7	0	7	0	
2021년	상반기	ō	하자검사 대	대장 미직	성 및 하	자검사 미	실시로		2019~2021
2021년	하반기	대상 수 산정 불가						발주공사	
2022년	상반기	34	34	0	6	2	4	0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매년 2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만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79건(정기 62건, 만료 16건)에 대하여 정기 14건, 만료 11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만료 5건에 대하여 검사 기한을 미준수 하였음.
- 또한, 2021년도 하자검사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검사 대상 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년도 하자검사를 미실시함.
-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책임기간 이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계약법」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법령을 준수 하여 **하자검사 대장을 작성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신청기간	위임장 기재사항 누락	인감 발급번호 미기재	비고
2019. 10. 19. ~ 감사일 현재	185건	신청기간 전체 (2019.10.19.~2021.12.31.)	

나. 위법·부당사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의하면 위임장은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에서는 2019. 10. 19.부터 현재까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및 동의서에 위임날짜, 발급용도, 발급번호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임장 185건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위임장 및 동의서에 발급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O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시고, 향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 직무연찬 등을 통하여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시정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O 장애인 자격상실자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현황

- 대상기간 : 2019. 10. 19. ~ 현재

		명		자격상실		장애인등록				
연번	성		명	명	성 명	생년월일	사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1	OC		*****	사망	20191231	부	미송달			
2	00	\bigcirc	*****	사망	20200226	부	20210216			
3	00	\bigcirc	*****	사망	20200920	부	20210216			
4	0	\bigcirc	*****	사망	20201019	부	20210216			
5	00	\bigcirc	*****	사망	20201103	부	20210216			
6	OC	\bigcirc	*****	사망	20201128	부	20210216			
7	00	\bigcirc	*****	사망	20201130	부	미송달			
8	00	\bigcirc	*****	사망	20210211	부	20210216			
9	00	\bigcirc	*****	사망	20210925	부	미송달			
10	00		*****	사망	20210930	부	미송달			
11	00	\bigcirc	*****	사망	20211013	부	미송달			
12	00		*****	사망	20211026	부	미송달			
13	00		*****	사망	20211102	부	미송달			
14	OC		*****	사망	20211118	부	미송달			
15	00	\bigcirc	*****	사망	20220110	부	미송달			
16	OC		*****	사망	20220210	부	미송달			
17	00	\bigcirc	*****	사망	20220302	부	미송달			
18	00		*****	사망	20220310	부	미송달			
19	00		*****	사망	20220411	부	20220413			
20	00		*****	사망	20220414	부	미송달			
21	00		*****	사망	20220518	부	미송달			
22	00		*****	사망	20220609	부	미송달			
23	OC		*****	사망	20220615	부	미송달			
24	00	\bigcirc	*****	사망	20220701	부	미송달			

나. 위법 · 부당사항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 10. 19.부터 현재까지 사망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 된 24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미회수하였으며,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미발송 하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장애인등록증 미 회수된 24명에 대하여 즉시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금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

【행정상】주 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대상기간	구분	지연일수 / 건	지연불입액	비고
	Я	73일 / 47건	1,793,500	
2019.11.18. ~ 현재	인증기	44일 / 30건	1,722,500원	
	무인민원발급기	29일 / 17건	71,000원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 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12조 제2항에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시스템에 따른 학교민원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의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처리기관에 송금하고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에서는 2019. 11. 18.부터 현재까지 제증명 등 수수료 총1,793,500원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 총 73일을 지연하여 불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장은

O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제증명 등의 수입금 불입 처리를 지연하는 등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신청기간	면제사유 등 기재 누락	이전 증 반납 미확인	미고
2019. 10. 19. ~ 감사일 현재	전체기간	4건	

나. 위법·부당사항

- 「주민등록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와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발급신청서[시행령 별지 제32호 서식]에 면제대상 해당사항에 체크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동의를 신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 이전 증을 반납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 면제인 경우
 - 1) 보안 미적용 증(2006.11.01.이전 발급된 증)의 재발급
 - 2) 지문정보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 또한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서 접수 시 징수하여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에 첨부 하고 소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재발급신청서 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 해당사유 기재(또는 증명자료 제출) 및 이전 증 반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

_ 【행 정 상】 시 정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미실시 현황

- 대상기간 : 2019. 10. 19. ~ 현재

	,	생년월일	종결 심사 일자	사후관리	모니터상	모니터상담일자	
연번	성 명			여부	1회	2회	─ 비고
1	000	*****	20191227	ᆌ			
2	000	*****	20200204	부			
3	000	*****	20200909	부	20210305		3개월이내 미방문
4	000	*****	20201023	北			
5	000	*****	20201209	ᆌ	20210812		3개월이내 미방문
6	000	*****	20201210	ᆌ			
7	000	*****	20201217	부	20210113		
8	000	*****	20210113	부	20210204		
9	000	*****	20210113	부			
10	000	*****	20210202	儿	20220129		
11	000	*****	20210219	ᆌ			
12	000	*****	20210225	ᆌ			
13	000	*****	20210416	부			
14	000	*****	20210416	귀	20210609		
15	000	*****	20210416	부	20211217		3개월이내 미방문
16	000	*****	20220105	부			
17	000	*****	20220105	ᆌ			
18	000	*****	20220105	무			
19	000	*****	20220105	부	20220512		3개월이내 미방문
20	000	*****	20220105	부			
21	000	*****	20220105	부			
22	000	*****	20220106	ᆌ	20220523		3개월이내 미방문
23	000	*****	20220106	ᆌ			
24	000	*****	20220106	부	20220718		3개월이내 미방문
25	000	*****	20220315	바	20220531		
26	000	*****	20220421	√ п	20220523		
27	000	*****	20220425	네.			
28	000	*****	20220425	√ п	20220531		
29	000	*****	20220425	부	20220711		
30	000	*****	20220425	부	20220704		
31	000	*****	20220425	바	20220531		

나. 위법 · 부당사항

- 「희망복지지원업무안내」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란 "지역사회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해 나가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 기간을 설정 하여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재개입 필요성 등의 판단을 통한 위기 상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에서 종결 후 9개월 내 상담계획수립후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2회 실시 (서비스 연계 가구는 종결 후 3개월 이내 1회 실시)하여 모니터링 대상자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 10. 19.부터 현재까지 사례관리 종결 대상자 46명 중 31명에 대하여 모니터링 상담계획 미수립 및 9개월 단위로 2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장은

○ 모니터링 미실시 대상자 31명에 대하여 계획수립 후 모니터링 상담을 2회 실시하여 사례관리 종결 대상자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안전관리비 계상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천원)

20 11 BH	7 11110	공사금액			יי אין די	C 3 H	
공 사 명	공사내용	합계	도급액	관급자재비	공사기간	도급자	
합 계	5 건	47,328	36,020	11,308			
◇◇동 ◇◇◇길 정자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공사	보도블럭 A=30㎡ 경계석설치 L=15m	2,874	2,874	0	2020.03.24. ~2020.03.30	□□산업 ○○○	
◈◈동 ◈◈로 콘크리트포장 및 맨홀 보수공사	콘크리트포장 A=25㎡ 맨홀보수 5개소	3,487	3,487	0	2020.04.13. ~2020.04.20	□□산업 ○○○	
□□□ □□□길 (179-13) 보도블럭 교체공사	보도블럭 A=37.5㎡ 경계석설치 L=15m	4,575	4,575	0	2022.04.18. ~2022.05.03	□□산업 ○○○	
◎◎◎1길외 4개소 보도블럭 보수공사	아스콘덧씌우기 A=100㎡ 보도블럭 A=136㎡	10,112	7,634	2,478	2022.05.02. ~2022.06.12	□□건설(주) ○○○	
●●동 ●●●1길 배수로공사	아스콘덧씌우기 A=410㎡ 트렌치설치 L=72m	26,280	17,450	8,830	2022.05.16. ~2022.05.26	□□건설(주) ○○○	

나.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포함되어야할 항목들을 현장여건별로 판단하여 공사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에서는 상기와 같이 「△△△ △△△길 정자 경계석 및 보도 블럭 설치공사외 4건」을 추진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안전관리비)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공사안내판, 칼라콘, 라바콘, 가림막휀스, 교통신호수 등)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건설공사 추진시에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여 소규모건설 사업장 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